

수원지방법원 2015. 11. 13 선고 2015가단1240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2015. 10. 23.

판결 선고2015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㉗부분 목조구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49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).

2. 피고 1, 3에 대하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피고 2, 4에 대하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김영민

별지